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0. 13.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정부의 주민참여예산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주민제안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와 연계하는 등 조례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주민참여예산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규정 신설과 의회 설명 의무 명시(안 제8조)

다. 주민제안사업의 적합성·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라. 담양군과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주민제안사업
의 주민총회 상정·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33조)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10. 13. ~ 10. 18.(5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
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조문

의견

2. 의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부

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2. 각종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사전투표 등을 통한 참여
3. 서면 등을 통한 의견 제출
4. 공모사업에의 응모 등

③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사업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참여예산 편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 회계연도의 규모보다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재정여건 및 주민제안사업의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축소된 경우 그 사유를 예산안 제출 시 군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공개)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2조(설치) 군수는 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활동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5.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심의·조정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공간재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범위) 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거를 통해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
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
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군 예산의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 시 군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
다.

제24조(협의회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
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장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25조(설치) 군수는 읍·면별 주민제안사업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을 위하여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26조(기능) 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계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주민제안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
순위 결정
2.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총회 상정 대상사업의 선정

제27조(구성) ① 읍·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근무하는 사람 중 읍·면장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③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읍·면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8조(해촉) 읍·면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따른다.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읍·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읍·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읍·면 지역발전토론회) 주민제안사업은 지역발전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사전검토) 군수는 읍·면 위원회 개최 전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적합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제3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읍·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주민제안사업의 주민총회 상정 및 제출 등) ① 읍·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6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제안사업을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에 제출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주민자치회는 해당 주민제안사업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읍·면장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주민제안사업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등

제34조(예산교육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읍·면 위원회 위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6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읍·면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제25조에 따른 읍·면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위촉된 읍·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위원은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읍·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읍·면 위원회는 위원의 신규·보궐 위촉 시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을 우선 위촉하여 해당 구성비율을 충족하도록 한다.